

교육부,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화 추진

원대협 “사이버대 경계·정체성 모호해져… 정책 수용 불가”

온라인 학위승인 기준안 철회 요청
유은혜 장관 면담·단체집회 예고
“대학 한계 벗어나는 위법한 처분”

교육부가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사이버대학이 반발하고 있다. 일반 대학 수업 방식이 과거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 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할 경우 사이버대학의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학이 학위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거 바꾸며 ‘사이버대학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은 일반대학에 100% 온라인 학사·석사 학



교육부의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제도화에 사이버대학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한 사이버대학 관계자가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메트로신문 DB

위 과정을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일반 대학에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훈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인 국내 대학은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을 포함해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와 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과정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이 가능해진다.

사이버대학이 우려하는 사항은 일반 대학에 별도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형태

의 학사 운영 방식은 사실상 국내 사이버대학 시스템과 동일하고, 단순히 일반대학이 기존 학사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을 확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원대협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푼 데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본지 2020년 6월 3일자 14면 참조>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일반대의 원격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것까지는 사이버대도 이해했지만, 온라인 학위과정을 제도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이는 향후 일부 일반대학을 사이버

대학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히 온라인수업이 아닌 ‘온라인 학위’ 수여 제도를 훈령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2조는 수업 방법에 대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지만, 훈령을 통해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위임 위헌요소라는 게 법전문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법 정체성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원대협은 강조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돼 있다”며 “지난 20년간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노력해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온 21개 전체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승인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이

그동안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봉괴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원대협은 이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TTT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총장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과 정책 철회를 위한 집회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의 원격수업과 공동학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대학 수업 방식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일반대학이 교육부장관 승인을 거쳐 학·석사까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대학, 高3 구제 팔 걷어…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교협 2022학년도 대입계획 발표

서울대 등 56개교, 대입 전형 변경
실기종목 축소 등 실적반영 비율 ↓

서울대와 중앙대 등 주요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 재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 수험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대입 전형을 변경한 대학은 총 56개교로 지난해 101개교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서강대·중앙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낮춰

대입 시행계획 변경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가 대표적 변화다. 서강대와 서울대, 중앙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선발·고교장추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서강대는 고교장추천(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로 낮췄다. 변경 전에는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였다. 수능 3개 영역

<2022학년도 대입전형 변경 현황>

주요내용	대학수
실기·실적 전형 인정범위 변경	22
실기고사 종목 축소	20
전형요소 반영방법 변경	17
최저학력기준 완화	4
전형일정 변경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등급 총합이 6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이를 각 영역 3등급 이내로 바꿨다.

서울대도 지역균형선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 모집단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중앙대는 중간·기말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하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변경했다. 인문계열 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을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서울캠퍼스 약학부를 제외한 서울·안성캠퍼스 자연계열 학과의 같은 전형에선 탐구 ‘2과목 평균’을 ‘상위 1과목’으로 축소 반영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4개교 외에 재수생 등 졸업생이 포함될 수 있는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신청해 온 대학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대면활동이 위축돼 학교생활기록부작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 학종에서도 이를 상황을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실기·실적 전형 인정 범위 변경…연대·한양대 등 면접고사 등 전형 축소

실기·실적 전형의 인정범위를 변경한 대학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22개교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대회 참가 실적 등을 고려해서다.

방역 차원에서 실기고사 종목이나 유형을 바꾸거나 축소한 대학은 명지대, 성신여대, 한신대, 한양대 등 20개교였다. 실기고사는 특성상 수험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밀집하기 쉬운 데다 비밀이 확산해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면접고사를 빼는 등 전형 단계를 축소한 학교는 가천대, 서울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인천대, 연세대, 한양대 등 17개교다.

단국대, 인천대, 한양대 등 7개교는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일정을 1~2일씩 늘려 응시생을 분산하겠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교협 승인사항 외에도 각 대학은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비대면으로 자체 전환할 수 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수험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올해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확정 공고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야 대학별고사 일정 중복 등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각 대학 입학처(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취업후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 사라진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내년부터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이 폐지된다. 또 대학 원생도 이 대출의 신청 대상이 되면서 박사과정은 6000만원까지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기간 중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부터 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해 대학원생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연령이 만 40.3세인 점을 감안해 대출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했다. 대출 규모는 학위과정별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되, 생활비 대출은 기존 학부생과 동일하게 연간 300만원이다. 등록금 대출은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다. 상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으로 공제 후 1413만원 수준이다. 기준상환율은 높은 졸업연령과 등록금 등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해 상환율 25%를 적용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은 기존 직전학기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비율은 56%로 1만3877명이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